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

의 안 번 호 제 2845호

제출년월일 2021. 08. 23. 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를 통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업무추진비 사용 · 집행 명시함.(안 제3조)
- 나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명시함.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: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5조,

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08. 31. ~ 2021. 09. 06.

나) 예고결과 :

2) 부서협의 : 해당없음.

3) 관련부서 : 해당없음.

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5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업무추진비"란 김포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.
- 2. "의원"이란 김포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.
- 3. "회계관계공무원"이란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김포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)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「공직선거법」, 「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」및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추진비 사용제한)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할 수 없다.

- 1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
- 2. 심야시간(23시 이후), 휴일,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. 다만,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친목회, 동우회·동호회, 시민·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
- 4.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
- 5.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

6.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

제5조(예산집행 자료 작성)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현금 등)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 종료 후 다음달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보공개 범위)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점검)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